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이 수 철

나. 개정사유

- 전남도 회계 12600 - 1239 (96. 4. 12) 호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현행 화순군 여비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 동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용어 해석상의 미비점을 보완
(안 제4조)

다. 주요내용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 한도액은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함
(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용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
(안 제3조)
-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
(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 동조례 개정안은 전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현행 화순군 여비 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동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용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60
----------	-------

제출일자 : 1997. 5. 2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회계 12600-1239 ('96. 4. 12)호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현행 화순군여비 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 동 조례에서 준용하도록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용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함 (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용어 해석상의 미비점 보완 (안 제3조)
-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의 용어 해석상 미비점 보완 (안 제4조)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9조,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8조 제3항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의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